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88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5. 1. 7.

다. 회 부 일 : 2025.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인 직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고, 다음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의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점검 및 개선
- 안전관리담당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자, 관람자 등을 위한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생략)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생 략)

②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들은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해당 공연장 및 공연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조사의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점검 및 개선
5. 안전관리담당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연자, 관람자 등을 위한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공연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¹⁾은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의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시행령에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1) 「공연법」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1. 공연장운영자

가.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나. 객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이에 개정안은 안전관리조직 중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공연자 및 관람자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참고자료]에서 유사 입법례로 볼 수 있듯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각각 안전책임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11조의3제2항제6호가 “그 밖에 공연자, 관람자 등을 위한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전총괄책임자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1조제6항2)에서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문 간 충돌할 소지가 있고, 안전관리조직 중 안전총괄책임자

-
- 2)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 직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향후 하위 법령 개정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을 유지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추후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심사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공연장 안전과 관련된 「공연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공연업계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은 안전관리조직 중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11조의제3항(현행법 제11조의3제2항)³⁾을 수정하여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기준, 구성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9

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재난및안전 관리 기본법	제75조의2(안전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